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심의의 의미와 과제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安 小 榮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장

국제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협약의 이행상황과 관련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994년에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1996년에 심의 받은 바 있음). 이 글은 2003년 1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심의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1.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개요

■ 협약의 의의

국제아동권리협약은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완전하게 할 수 없고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당사국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바를 규정한 국제적 조치로서, 2002년 11월 현재 세계 191개국이 비준하여 유엔 협약 중 가장 많은 나라가 뜻을 같이하는 보편적인 협약이다. 이 협약은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노력 끝에 결실을 보게되었는데, 그 태동은 1924년 국제연맹총회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59년 유엔총회에서 제네바선언을 기초로 한 10개 항목의 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되었고, 1989년 11월 유엔총회

에서 만장일치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어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동년 9월 25일 서명하여 가입하였다.

■ 협약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국제아동권리협약은 전문, 3부, 5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최선의 이익원칙,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원칙 및 아동참여의 원칙 등 4개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생명권, 국적권, 의사표시권 등 시민적 권리와 가족과의 동거권, 양육을 받을 권리, 건강 및 의료지원, 사회보장, 교육관련 권리, 문화활동 참여권 등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 및 기타 학대, 유기, 착취, 인신매매, 무력, 분쟁, 마약 등으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 등을 중요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 협약 당사국의 의무

국제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협약상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해 입법, 행정, 사법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용자원의 최대한도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에는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UN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II. 아동권리협약 관련 지난 5년간의 성과

우리나라가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이후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기간 동안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이행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예방체계 구축

학대아동을 위한 예방 및 보호체계를 구축하였다. 2000년 7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

학대의 정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국 16개 시·도에 18개소의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신고접수 전화(국번없이 1391)를 운영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는 국가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2003년도에 2개소를 더 증설하게 되며, 향후 시·도 단위의 거점센터와 시·군·구 단위의 소규모센터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99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을 제정하여 가정내 아동에 대한 폭력과 아동의 성학대, 성착취에 대한 대응 강도를 한층 강화하였다.

■ 『어린이보호·육성 종합계획』 수립

2002년 5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 13개 부처가 참여하여 어린이 권리증진, 보건복지서비스 증진, 안전강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건전육성 지원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 「어린이보호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세부계획의 추진, 계획의 추진상황 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의 협의·조정 등 이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13개 부처(청)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어린이보호·육성추진협의회」와 보건복지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어린이보호·육성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확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시설이나 소년소녀가정에서 보호하기보다는 건전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0년부터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부터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홍보, 위탁가정의 발굴, 교육, 사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이 확대되면서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경제위기 이후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편하여 2000년부터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주거급여를 신설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수급자의 수가 1999년 54만명에서 2000년에는 149만명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수준도 향상되었다.

■ 기타
 이 외에도 매우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정부는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아동의 인권을 포함한 국내 인권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동근로와 관련하여서는 최소근로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5세로 상향조정하여 근로로부터의 아동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부가 외국인일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모가에 입적을 가능케 하여 외국인 부를 둔 아동 및 부가 미상인 아동의 국적취득 및 호적등재를 가능하게 하여 아동의 출생 배경에 의하여 차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개혁 조치로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2002년 실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III. 향후 과제

■ 아동권리협약 이행 감시·조정 기구 설치·운영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번 심의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항구적, 다각적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그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데, 우리나라는 정부 10여 개 부처(청)가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아동정책을 제각기 추진하고 있다. 1994년 제1차 국가보고서 작성 및 1999년 제2차 보고서 작성시에 정부,

민간단체, 학계 관계자가 일시적으로 모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협약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으면서 협약이행의 감시 조정을 위한 상설 기구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기구가 설치·운영되면 우리 나라 아동의 권리신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아동권리협약의 홍보·교육 실시로 아동권리 인식전환 유도

그 동안 정부 및 민간단체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국민은 물론 아동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관계자에게도 아동권리협약의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이에 따라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협약의 기본정신이 각종 아동관련 정책수립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즉, 아동정책에 아동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의 개선이 향후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협약내용에 대한 홍보 및 아동권리교육을 강화하고 아동권리 의식 수준의 파악, 주기적인 홍보 및 교육의 평가 작업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차별문제와 같이 우리 사회의 전통 및 문화와 상충되는 협약의 이행 문제에 대하여는 서구 문화와 우리 문화가 조화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 유보 철회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유보한 세 가지 협약 조항 중 이혼가정 아동의 부모면접 교섭권에 대하여는 현재 이를 금하는 관련 법 규정이 없으므로 법 해석상 부모면접 교섭권 허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보장하는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으면 사실상의 보장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입법을 마련한 후 유보를 철회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시설중심의 아동보호정책에서 가정보호정책으로 전환

그동안 요보호아동의 보호 방식은 아동복지시설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가 중요한 권리의 하나임을 고려하여 가정위탁, 그룹홈 보호 및 국내입양 등 가정보호를 활성화함으로써 요보호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그룹홈을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으로 지정하여 그간 아동복지시설만이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개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국내입양 가정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설 위주의 보호로부터 가정보호로의 전환을 도모해 나아갈 것이다.

■ 각종 차별의 해소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연령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선언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도 무차별의 원칙을 아동복지법 이념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당선자는 성별, 장애, 비정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학벌에 대한 차별 철폐 등 양성평등과 사회통합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사회에서의 다양한 차별은 점진적으로 시정되어질 것이다. 심의시 거론된 최소 혼인연령의 성별 차이는 남녀평등에 따른 결혼의 선택권과 여성인력 활용제고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개선 검토해 나아갈 것이다.

■ 교육개혁의 지속 추진

우리나라의 경쟁위주의 교육제도가 아동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소리가 높은데, 지속적인 교육개혁으로 이러한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도부터 도입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생중심으로 개편되어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부담도 종전 교육과정보다 감소되었다. 대학입시제도도 학생선발의 유일한 기준이었던 학과 성적 이외에 학생의 특기와 적

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향후에도 교육의 지나친 경쟁성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개혁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내의 학생체벌 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못하지만, 학교체벌을 금지하는 학교도 상당수이므로 점차 이런 분위기가 확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V. 맺는 말

아동의 권리 보장 사상은 20세기에 들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아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키우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특히 고령사회, 저출산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어느 때보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이 강조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정부도 이러한 인식 하에 13개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보호육성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비롯한 여러 시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 이번 국제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의가 깊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아동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건전하게 양육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아동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권리협약의 성실한 이행이야말로 아동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는 첫걸음임을 명심하면서 학계, NGO, 정부가 힘을 합해 노력해 나아가야 하겠다. 